

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
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(건설해양농림위원회)

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. 13.
건설해양농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. 6.

전홍표·권성현·김경희·김남수·김묘정·김상현
김현일·문순규·박강우·박해정·백승규·서명일
서영권·심영석·오은옥·이우완·이원주·이종화
이천수·이해련·정순욱·진형익·최은하·한상석
한은정·황점복 의원(26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. 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3.1.13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전홍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~ 제4조)

-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와 시공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5조)
-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86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 - 2)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(정의), 제3조(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)
 - 3)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6조(위임 및 위탁),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(안전표지)
 - 4) 「도로법」 제23조(도로관리청)
- 입법예고(2023.1.6.~1.11.) 결과: 제출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종덕)

가. 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~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, ‘노면 색깔 유도선’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
-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「도로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 규정함

-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안 제5조는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도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에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체교차로(4개구간), 평면교차로(5개구간)로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사고다발지점 등은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시공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의 매뉴얼에 따르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는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
 - 시장이 법령에 따라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려는 경우, 그 설치·관리 권한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6조제1항¹⁾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관서 협의 사항을 둠.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“아름다운 해안”을 “깨끗한 연안”으로 문구를 일부 수정함

다. 검토의견

-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, 다차로 교차로 등에서 방향 및 유도표시의 미흡으로 안전상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,
 -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고속도로 경로혼선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*을 설치하였으며,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지자체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음.

1) (참고) 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①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·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,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. 다만, (이하생략)

1.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권한
2.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

* “노면 색깔 유도선”이란 교차로, 인터체인지,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뜻함

*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현황(개소)

구분	합계	의창구	성산구	마산합포구	마산회원구	진해구
~2021년	29	5	6	11	2	5
2022년	29	1	17	7	2	2
합계	58	6	23	18	4	7

-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「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(2017년)」²⁾에 따라 노면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있으며,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에 맞춰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을 개정³⁾하여 안전표지*의 종류에 ‘노면색깔유도선 표시’를 추가 신설하였음.
-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.
-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교통안전시설(안전표지 포함)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, 이는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의 유지에 관한 사무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 제4호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,

2)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(2017년)

☞ 본 매뉴얼은 별명, 지침 등의 성격이 아닌 매뉴얼의 성격으로 일선 도로관리자의 업무참고를 위해 제정되었음 (내용 출처: 매뉴얼 P12 하단 참조)

- (주요내용)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사업 적용범위, 설치장소, 구성요소(색상, 실선 등), 관리 및 점검 등 노면색깔 유도선의 기능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세부지침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함.

3)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 별표6(안전표지의 종류, 만드는 방식 및 설치·관리기준) 개정[2020. 10. 7.개정, 2021. 4. 17.시행]

- (개정이유)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의 개선·보완을 위하여 노면색깔유도선 표시 등을 신설함.

- 본 조례 제정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: 기재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: 없음

6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

*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22. 7. 11.>

안전표지의 종류, 만드는 방식 및 설치·관리기준

(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)

5. 노면표시

일련 번호	종 류	만드는 방식 (단위 : 센티미터)	표시하는 뜻	설치기준 및 장소
525의 3	노면 색갈 유도선 표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차로, 나들목, 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분홍색,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선을 표시하는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<u>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의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</u> 분홍색,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실선과 백색의 갈매기 표시를 혼용하여 설치 · 노면색갈유도선 내에 일정 간격으로 표시되는 갈매기 표시는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표시 간격을 조정 · 1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, 2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과 녹색 또는 연한녹색으로, 3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, 녹색, 연한녹색으로 설치

창원시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

참 고 사 항

□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효과



* 한국도로공사가 2011~2015년 고속도로 내 76개 지점에서 색깔 유도선을 시범 운영한 결과, 색깔 유도선 설치 후 교통사고 건수가 222건으로 **설치 전(305건)보다 27% 감소함**. 특히 여러 도로가 만나는 **나들목(IC)에서는 사고가 40% 가까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**.

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

□ 2021년 창원시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

구분	사고건수(건)	사망자수(명)	부상자수(명)
합계	2,556	52	3,511
터널안	14	0	36
철길건널목	-	-	-
기타	99	2	112
불명	-	-	-
교량위	11	0	16
고가도로위	8	0	19
지하차도(도로)내	2	0	4
기타단일로	977	26	1,336
교차로내	920	12	1,287
교차로횡단보도내	133	5	135
교차로부근	392	7	566

출처: TAAS(교통사고분석시스템)